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4.

제 안 자 : 국토교통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 가. 공항 운영의 연속성 및 지속적인 적정성 확보를 위해 공항운영증명의 유효기간 대신 유효기간에 상응하는 유효성 검사를 받도록 하고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항운영증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공항운영증명서를 빌려주는 것을 금지함(안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신설).
- 나. 유효성 검사의 실효성을 위해 유효성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공항을 운영하거나, 유효성 검사 결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가 적정하게 유지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공항운영증명의 취소·정지 근거를 보완함(안 제41조).
- 다. 공항운영자 등이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 중 일부에 대하여 동등한 안전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방법, 대체운영절차 또는 대체시설 등을 마련한 경우 동등한 안전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수단의 인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안전수단을 인정받은 경우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안 제55조의2 및 제64조의2 신설)

라. 청문 대상에 ‘대체안전수단 인정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를 추가하고, 공항운영증명의 유효성 검사 신설 및 공항운영증명의 대여 등 금지 의무에 따른 벌칙규정을 보완함(안 제62조 및 제64조).

마.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8조에 따라 공항운항증명을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개정규정에 따라 유효성 검사를 신청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8조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제3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공항운영증명에 대한 유효성 검사) ①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운영자는 공항의 안전운영체계 유지 여부를 확인받기 위하여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날(제2항에 따라 유효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의 종료일을 말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항운영증명의 유효성 검사(이하 “유효성 검사”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효성 검사를 신청받은 경우 유효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 결과를 신청한 공항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제2항에 따른 검사 내용 및 방법, 검사 결과의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3(공항운영증명의 대여 등 금지) ①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항운영증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공항운항증명서를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항운영

증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공항운항증명서를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 제2호의2 또는 제2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효성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공항을 운영한 경우

2의3.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실시한 유효성 검사 결과 공항의 안전 운영체계가 적정하게 유지되지 아니한 경우

2의4. 제38조의3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항운영증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공항운영증명서를 빌려준 경우

안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의2(대체안전수단의 인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의 적용을 대체하려는 자는 동등한 안전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하 “대체안전수단”이라 한다)의 인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전쟁,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고 공항안전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2. 공항운영자, 비행장 또는 이착륙장을 설치·관리·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중 일부에 대하여 동등한 안전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방법, 대체운영절차 또는 대체시설 등을 마련한 경우

가.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설설치기준

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

다.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라. 제38조제4항에 따른 공항안전운영기준

마. 제43조제5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을 신청받은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위험도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기준 적용과 동등한 수준의 공항안전을 확보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기준에 대한 대체안전수단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대체안전수단을 인정받은 자는 인정받은 대체안전수단의 내용 및 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대체안전수단을 인정한 경우 대체안전수단의 인정 사항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사 결과 공항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은 자에게 시

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대체안전수단의 내용 및 조건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에 따라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세부사항 및 대체안전수단 인정의 신청,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5조의2제6항에 따른 대체안전수단 인정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제6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38조를 위반하여 공항운영증명을 받지 아니하고”를 “제38조 또는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공항운영증명 또는 공항운영증명의 유효성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38조의3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항운영증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공항운영증명서를 빌려준 자
2.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항운영증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공항운영증명서를 빌린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알선한 자

안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조의2(대체안전수단 인정 등의 위반의 죄) 제55조의2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안전수단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8조 본문 중 “제65조부터”를 “제64조의2, 제65조부터”로 한다.

안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공항운영증명의 유효성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8조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유효성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38조(공항운영증명 등) ① ~ ④ (생략) <u><신 설></u>	제38조(공항운영증명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제2항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제3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증명의 잔여 유효기간을 변경된 유효기간으로 한다.</u>	제38조(공항운영증명 등) ① ~ ④ (개정안과 같음) <u><삭 제></u>
<u><신 설></u>	<u>⑥ 공항운영증명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이 정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가 이를 반납할 때까지 유효하다.</u>	<u><삭 제></u>
<u><신 설></u>	<u>⑦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가 제5항에</u>	<u><삭 제></u>

<신 설>

따른 유효기간 만
료 후 계속 공항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
부장관으로부터 다
시 증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
항을 준용한다.

제38조의2(공항운영증
명에 대한 유효성
검사) ① 제38조제1
항에 따라 공항운
영증명을 받은 공
항운영자는 공항의
안전운영체계 유지
여부를 확인받기
위하여 공항운영증
명을 받은 날(제2항
에 따라 유효성 검
사를 받은 경우에
는 그 검사의 종료
일을 말한다)부터 5
년이 되는 날의 6
개월 전까지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공
항운영증명의 유효

<신 설>

성 검사(이하 “유효
성 검사”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유효성 검사를 신
청받은 경우 유효
성 검사를 실시하
고, 그 검사 결과를
신청한 공항운영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제2항에
따른 검사 내용 및
방법, 검사 결과의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
한다.

제38조의3(공항운영증
명의 대여 등 금지)

①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는 다른 사
람에게 자기의 명
의를 사용하여 공

제41조(공항운영증명 취소 등) ① 국토 교통부장관은 공항 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공항운영증명을 취	제41조(공항운영증명 취소 등) (현행과 같음)	<u>항운영증명에 따른</u> <u>업무를 수행하게</u> <u>하거나 공항운항증</u> <u>명서를 빌려 주어</u> <u>서는 아니 된다.</u> ② <u>누구든지 공항</u> <u>운영증명을 받은</u> <u>자의 명의를 사용</u> <u>하여 공항운영증명</u> <u>에 따른 업무를 수</u> <u>행하거나 그 공항</u> <u>운항증명서를 빌려</u> <u>서는 아니 된다.</u> ③ <u>누구든지 제1항</u> <u>이나 제2항에서 금</u> <u>지된 행위를 알선</u> <u>하여서는 아니 된</u> <u>다.</u> 제41조(공항운영증명 취소 등) ① ----- ----- ----- ----- ----- -----
---	---	---

소하거나 6개월 이
 내의 기간을 정하
 여 공항운영의 정
 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보완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
 만, 제1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공항
 운영증명을 취소하
 여야 한다.

1.2. (생략)

<신설>

<신설>

<신설>

 -----.

제1호, 제2호의2 또
 는 제2호의4에-----

1.2. (현행과 같음)

2의2. 제38조의2제1

항을 위반하여
 유효성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공항을 운영한
 경우

2의3. 제38조의2제2

항에 따라 실시
 한 유효성 검사
 결과 공항의 안
 전운영체계가 적
 정하게 유지되지
 아니한 경우

2의4. 제38조의3을

3. ~ 5.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제55조의2(적용의 면제·예외에 관한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의 적용의 면제·예외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기준의 적용의 면제·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1. 전쟁, 질병, 자연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 항 운 영 증 명 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공 항 운 영 증 명 서를 빌려준 경우

3.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5조의2(대체안전수단의 인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의 적용을 대체하려는 자는 동등한 안전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하 “대체안전수단”이라 한다)의 인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전쟁, 질병, 자연

재해 등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
생하여 공항안전
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

2. 이 법에서 정하
는 기준의 적용
보다 면제·예외
가 공항안전 및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3. 신기술의 연구
및 개발 등을 위
하여 면제·예외
를 적용하는 것
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공항안
전의 지속적 확
보를 위하여 국
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이 법의 기준
적용에 대한 면제

재해 등으로 인
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고
공항안전을 위하
여 긴급히 필요
한 경우

2. 공항운영자, 비
행장 또는 이착
륙장을 설치·관
리·운영하는 자
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기준 중
일부에 대하여
동등한 안전 수
준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방법,
대체운영절차 또
는 대체시설 등
을 마련한 경우

가. 제24조제1항
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

나. 제25조제3항

· 예외를 신청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검토한 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면제·예외를 인정한 경우 인정한 사항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에 따른 이차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

다.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관리기준

라. 제38조제4항에 따른 공항 안전운영기준

마. 제43조제5항에 따른 항행 안전시설의 설치기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을 신청받은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위험도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기준 적용과 동등한 수준의 공항안전을 확보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기준에 대한

대체안전수단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대체안전수단을 인정받은 자는 인정받은 대체안전수단의 내용 및 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대체안전수단을 인정한 경우 대체안전수단의 인정 사항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사 결과 공항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은 자
에게 시정조치 등
을 명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은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안전
수단의 인정을 취
소하거나 그 효력
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대체안전수단
의 인정을 취소하
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
의 부정한 방법
으로 대체안전수
단의 인정을 받
은 경우

2. 제2항에 따라 인
정받은 대체안전
수단의 내용 및
조건을 유지하지

		<u>아니한 경우</u> 3. 제5항에 따른 시 정조치 등의 명 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에 따라 국 민의 생명·안전 에 위해가 발생 하거나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 우 ⑦ 제1항부터 제6 항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세부사항 및 대체안전수단 인정의 신청,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청문) 국토교 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처분 을 하려면 청문을	제62조(청문) (현행과 같음)	제62조(청문) ----- ----- ----- ----- -----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제64조(공항운영증명
에 관한 죄) 제38조
를 위반하여 공항
운영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공항을
운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신설>

제64조(공항운영증명
에 관한 죄) (현행
과 같음)

-----.

1. ~ 3. (현행과 같
음)

4. 제55조의2제6항
에 따른 대체안
전수단 인정의
취소 또는 효력
정지

제64조(공항운영증명
에 관한 죄) ① 제3
8조 또는 제38조의
2를 위반하여 공항
운영증명 또는 공
항운영증명의 유효
성 검사를 받지 아
니하고-----

-----.

② 제38조의3을 위
반하여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

		<u>금에 처한다.</u> <u>1. 다른 사람에게</u> <u>자기의 명의를</u> <u>사용하여 공항운</u> <u>영증명에 따른</u> <u>업무를 수행하게</u> <u>하거나 공항운영</u> <u>증명서를 빌려준</u> <u>자</u> <u>2. 공항운영증명을</u> <u>받은 자의 명의</u> <u>를 사용하여 공</u> <u>항운영증명에 따</u> <u>른 업무를 수행</u> <u>하거나 공항운영</u> <u>증명서를 빌린</u> <u>자</u> <u>3. 제1호 또는 제2</u> <u>호의 행위를 알</u> <u>선한 자</u> <u>제64조의2(적용의 면</u> <u>제·예외 위반의</u> <u>죄) ① 제55조의2를</u> <u>위반하여 거짓이나</u> <u>부정한 방법으로</u> <u>면제·예외를 인정</u> <u>제64조의2(대체안전수</u> <u>단 인정 등의 위반</u> <u>의 죄) 제55조의2를</u> <u>위반하여 거짓이나</u> <u>부정한 방법으로</u> <u>대체안전수단을 인</u>
<u><신 설></u>	<u>제64조의2(적용의 면</u>	<u>제64조의2(대체안전수</u>

	<u>받아 이 법에서 정하는 안전에 관한 사항에 위해를 끼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u> <u>이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u> <u>② 제55조의2의 면제·예외를 허위 또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u>정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제6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u>제65조부터 제67조까지</u> 및 제67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제68조(양벌규정) (현행과 같음)	제68조(양벌규정) --- ----- ----- ----- ----- ----- -----제64조의2, 제65조부터----- ----- ----- -----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2조(공항운영증명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공항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공포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공항운영

부칙

제2조(공항운영증명의 유효성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8조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u>증명을 다시 받아야 한다.</u>	<u>에게 유효성 검사</u> <u>를 신청하여야 한다.</u>
--	-----------------------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840
----------	-------

발의연월일 : 2025. 10. 31.

발 의 자 : 맹성규 · 문진석 · 이연희
북기왕 · 김영호 · 장철민
박용갑 · 김기표 · 신영대
박홍배 의원(10인)

제안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국제 민간항공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하여 「국제민간항공협약」(대한민국은 1952.12.11. 가입) 제37조에 따라 모든 체약국이 협약 및 그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방식을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특히, ICAO는 국제 민간항공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각 체약국의 항공안전감독체계가 관련 국제기준 및 권고와 정합성을 이루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은 ICAO 이사국이자 세계 상위권의 항공운송 규모를 보유한 국가로서, 국제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항공운송사업자·정비업·공항운영자·교육기관·항공교통관제시설 등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감독 기능을 법률에 명확히 부여하고, 국제기준 및 권고와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가의 항공안전 수준을 한층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발급하는 공항운영증명에 유효기간을 규정함(안 제3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 나. 공항안전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시설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대한 면제·예외가 필요한 경우(전쟁·질병·자연재해·기술발전 등) 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등을 신설함(안 제55조의2 및 제64조의2 신설).

※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

- 가. 공항 운영의 연속성 및 지속적인 적정성 확보를 위해 공항운영증명의 유효기간 대신 유효기간에 상응하는 유효성 검사를 받도록 하고 공항운영증명의 대여 등 금지 의무를 신설함(안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신설).
- 나. 유효성 검사의 실효성을 위해 유효성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공항을 운영하거나, 유효성 검사 결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가 적정하게 유지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공항운영증명의 취소·정지 근거를 보완함(안 제41조).
- 다. 공항운영자 등이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 중 일부에 대하여 동등한 안전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방법, 대체운영절차 또는 대체시설 등을 마련한 경우 동등한 안전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수단의 인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안전수단을 인정받은 경우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안 제55조의2 및 제64조의2 신설)

라. 청문 대상에 ‘대체안전수단 인정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를 추가하고, 공항운영증명의 유효성 검사 신설 및 공항운영증명의 대여 등 금지 의무에 따른 벌칙규정을 보완함(안 제62조 및 제64조).

마.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8조에 따라 공항운항증명을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개정규정에 따라 유효성 검사를 신청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공항운영증명에 대한 유효성 검사) ①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운영자는 공항의 안전운영체계 유지 여부를 확인받기 위하여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날(제2항에 따라 유효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의 종료일을 말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항운영증명의 유효성 검사(이하 “유효성 검사”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효성 검사를 신청받은 경우 유효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 결과를 신청한 공항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제2항에 따른 검사 내용 및 방법, 검사 결과의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3(공항운영증명의 대여 등 금지) ①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항운영증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공항운항증명서를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항운영

증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공항운항증명서를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 제2호의2 또는 제2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 제2호의3, 제2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효성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공항을 운영한 경우

2의3.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실시한 유효성 검사 결과 공항의 안전 운영체계가 적정하게 유지되지 아니한 경우

2의4. 제38조의3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항운영증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공항운영증명서를 빌려준 경우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대체안전수단의 인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의 적용을 대체하려는 자는 동등한 안전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하 “대체안전수단”이라 한다)의 인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전쟁,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고 공항안전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2. 공항운영자, 비행장 또는 이착륙장을 설치·관리·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중 일부에 대하여 동등한 안전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방법, 대체운영절차 또는 대체시설 등을 마련한 경우

가.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설설치기준

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

다.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라. 제38조제4항에 따른 공항안전운영기준

마. 제43조제5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을 신청받은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위험도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기준 적용과 동등한 수준의 공항안전을 확보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기준에 대한 대체안전수단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대체안전수단을 인정받은 자는 인정받은 대체안전수단의 내용 및 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대체안전수단을 인정한 경우 대체안전수단의 인정 사항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사 결과 공항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은 자에게 시

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대체안전수단의 내용 및 조건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에 따라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세부사항 및 대체안전수단 인정의 신청,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5조의2제6항에 따른 대체안전수단 인정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제6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38조를 위반하여 공항운영증명을 받지 아니하고”를 “제38조 또는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공항운영증명 또는 공항운영증명의 유효성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38조의3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항운영증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공항운영증명서를 빌려준 자
2.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항운영증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공항운영증명서를 빌린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알선한 자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대체안전수단 인정 등의 위반의 죄) 제55조의2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안전수단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8조 본문 중 “제65조부터”를 “제64조의2, 제65조부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항운영증명의 유효성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8조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유효성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8조의2(공항운영증명에 대한 유효성 검사) ①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운영자는 공항의 안전운영 체계 유지 여부를 확인받기 위하여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날 (제2항에 따라 유효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의 종료 일을 말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항운영증명의 유효성 검사(이하 “유효성 검사”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u> <u>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효성 검사를 신청받은 경우 유효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 결과를 신청한 공항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제2항에 따른 검사 내용 및 방법, 검사 결과의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u>

<신 설>

제41조(공항운영증명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항운영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항운영의 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보완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8조의3(공항운영증명의 대여 등 금지) ①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항운영증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공항운항증명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항운영증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공항운항증명서를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illegible]

1. · 2. (생략)

<신설>

<신설>

<신설>

3. ~ 5. (생략)

② (생략)

<신설>

-----.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효성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공항을 운영한 경우

2의3.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실시한 유효성 검사 결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가 적정하게 유지되지 아니한 경우

2의4. 제38조의3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항운영증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공항운영증명서를 빌려준 경우

3.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5조의2(대체안전수단의 인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의 적용을 대체하려는 자는 동등한 안전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하 “대체안전수단”이라 한다)의 인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전쟁,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기
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고 공항안전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2. 공항운영자, 비행장 또는 이
착륙장을 설치·관리·운영
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중
일부에 대하여 동등한 안전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
방법, 대체운영절차 또는 대
체시설 등을 마련한 경우

가.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

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이착
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

다.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관리기준

라. 제38조제4항에 따른 공항
안전운영기준

마. 제43조제5항에 따른 항행
안전시설의 설치기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을
신청받은 경우, 신청인이 제출

한 위험도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기준 적용과 동등한 수준의 공항안전을 확보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기준에 대한 대체 안전수단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대체안전수단을 인정받은 자는 인정받은 대체안전수단의 내용 및 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대체안전수단을 인정한 경우 대체안전수단의 인정 사항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사 결과 공항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은 자에게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62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u>경우에는 대체안전수단의 인정 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안 전수단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u> <u>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대체안전수단의 인정 을 받은 경우</u> <u>2.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대체 안전수단의 내용 및 조건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u> <u>3. 제5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 우</u> <u>4.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에 따라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u> <u>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 정과 관련된 세부사항 및 대체 안전수단 인정의 신청,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62조(청문) ----- -----
---	--

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제64조(공항운영증명에 관한 죄)
제38조를 위반하여 공항운영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공항을 운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

1. ~ 3. (현행과 같음)

4. 제55조의2제6항에 따른 대체 안전수단 인정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제64조(공항운영증명에 관한 죄)
① 제38조 또는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공항운영증명 또는 공항운영증명의 유효성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

② 제38조의3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항운영증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공항운영증명서를 빌려준 자

2.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항운영증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공항운영증명서를 빌린

<신 설> 제6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 및 제67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알선한 자 제64조의2(대체안전수단 인정 등의 위반의 죄) 제55조의2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안전수단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8조(양벌규정) ----- ----- ----- -----제64조의2, 제65조부터----- ----- ----- ----- ----- ----- -----.
--	--